#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0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최형두

주호영 • 이인선 • 고동진

서미화 · 성일종 · 한지아

김 건 · 백종헌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 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현행법의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7조).

법률 제 호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아 개 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최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 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u><</u>삭 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 <삭 제>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